

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 청 인	①성 명		②주민(법인)등록번호	—
	③ 주 소	(전화 :)		
	④영업장의명칭 (상 호)		⑤영 업 의 종 류	
	⑥영업장의소재지			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시장·군수·구청장				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구비서류				수수료
				5천원
1.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.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				

※ 신고안내

(뒤 쪽)

제출하는 곳	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·군·구	처 리 부 서	축 산 과
유 의 사 항	⑤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 에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우유류판매업·축산물수 입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 니다[예 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.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